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60
----------	-------

발의연월일 : 2018. 5. 4.

발의자 : 박경미 · 신창현 · 강훈식

이수혁 · 박주민 · 유승희

노웅래 · 홍영표 · 원혜영

남인순 · 김성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 법률에 따른 국제적 협력 및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을 문화, 예술, 관광 관련 분야로만 한정함으로써 실제로 국제문화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체육 분야가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 확립이라는 동법 제정의 취지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특히, 이미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츠인 태권도의 경우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과 전 세계 보급을 국정과제로 적

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육을 “국제문화교류”에 시급히 포함시켜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국제문화교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 분야 역시 중요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임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 등”을 각각 “관광, 체육 등”으로 하 고, 같은 조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신설한다.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21. 「국민체육진흥법」

2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 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제26조(정의) ----- ----- -----관광, 체육 등 ----- -----관광, 체육 등----- -----.
<u><신 설></u>	<u>20. 「스포츠산업 진흥법」</u>
<u><신 설></u>	<u>21. 「국민체육진흥법」</u>
<u><신 설></u>	<u>2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u>